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55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5532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가단16304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6. 1. 15.

판결 선고 2016. 2. 5.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가단1630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이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임야'로 바꾸고, 제4면의 ④항 다음에 「⑤ 원고의 주장처럼 F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4지분의 명의수탁자 내지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자 내지 실소유자라는 G이나 원고가 F이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인·허가비용, 대출금 이자, 공사대금 등에 관한 실질적인 비용분담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로서도 G에 대하여 'G이 피고를 대위하여 부담한 42,500,000원을 도로수용보상금 수령 시 지급하겠고, 이후 이 사건 임야의 매매 전까지 발생하는 분담금 또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유자 분담금 지불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⑥ 나아가 피고는 수년에 걸쳐 위 1/4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고, 2013. 7.경에는 H의 경비 분담 요청에 따라 공유자로서 1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한 반면, G이나 원고는 위 1/4지분의 실소유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임에도 정작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은 형식적인 소유명의자라는 피고에게 전가시켜 왔다는 셈이 되는 점, ⑦ 설령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애초에는 C의 증여의사가 없는 채로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수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에 상속인 전원의 명시적·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작지 않은 점」을 추가하며, 제4면 제17행의 부족증거 설시 부분에 '당심 증인 Q, I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범석

판사유경진

판사강완수

별지